

# 희생자구제 규정

[2019. 3. 25.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희생자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①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연맹 및 조합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과면)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임금손실액”이라 함은 통상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④ “후생복지기금”이라 함은 조합 활동에 따른 희생자의 구제와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후생복지기금 사용)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희생자 구제를 위한 용도
2.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

제3조의1(희생자의 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 시에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 가. 장례비
  - 나. 유족 조의금
  - 다.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정기간 매월 지급한다.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2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요양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매월 지급한다.

3.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과면)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해임·과면)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매월 지급한다.

4.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②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금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회복되어 과면기간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제3호 "나"목의 지급 기간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의2(복지증진)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기금조성에 기여한 직원 포함)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기준으로 1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4조(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① 희생자의 예우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복직 불가능자를 말하며 각 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명예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 및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희생자구제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시 기구로 하되, 제8조의 희생자구제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3.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2. 희생자의 본 조합에서의 직위

3.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4. 희생이 확정된 날짜

5.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6.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 신청 현재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보정명령 등)

-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기일지정 통지)

-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심사)

- ① 조합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제13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회의 결정)

-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사가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

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결정서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4. 증거의 판단여부

제16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할 수 있다.

#### 제17조(결정서의 송부)

-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조합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조합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재심청구)

청구인(희생 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조합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
2.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 제19조(재심의결)

-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한다.
- ②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희생자구제의 재원)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일정액을 구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각종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구제기금 적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희생자 발생 시 전 조합원으로부터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5. 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통상관례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어구의 해석) 본 규정의 어구의 해석권한은 심사위원회가 갖는다.

**【별지 제1호 서식】**

희생자 구제청구서						
접수번호						
청구자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희생자	소속		직위		희생일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구제청구 취지						
입증자료						
<p>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구제심사를 청구 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청구인   소속(주소) :           성       명  :</p> <p style="margin-left: 100px;">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p>						

### 【별지 제2호 서식】

희생자구제청구서 접수 및 발송대장							
발송 접수번호	발송 접수일	청구자		청구사유	결재		
		소속(주소)	성명		사무총장	수석 부위원장	위원장

### 【별지 제3호 서식】

희생자 구제 청구 보완 요구서						
접수번호						
청구자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희생자	소속		직위		희생일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희생사유						
보완요구 사    항						
보완요구 기    일						
<p>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희생자구제 청구에 따른                      흠결이 있어 보완요구서를 제출토록 통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위원회 위원장(인)</b></p> <p style="text-align: right;">귀하</p>						

### 【별지 제4호 서식】

희생자구제 청구 심사 관리						
접수번호						
청구자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희생자	소속		직위		희생일자	
주소						
희생사유						
희생일자						
희생내용						
<p><b>심사결정 및 통지경위</b></p> <p>1.     년   월   일 회의내용</p> <p>2.</p> <p>3.</p> <p>4.</p>						

### 【별지 제5호 서식】

희생자 구제(재) 심사결과						
접수번호						
청구자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희생자	소속		직위		희생일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희생내용						
구제방법	근거		결정 액			
<p>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희생자구제 심사결과를 통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위원회 위원장(인)</b></p>						

